##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7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태년 · 김영배 · 김준형

김태선 • 권칠승 • 한민수

김영진 · 송기헌 · 박용갑

정준호 · 염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

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 호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을 "기초연금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을 "기초연금액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u>&lt;삭</u>
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	<u>제&gt;</u>
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액한다.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	2
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u>기</u>	
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	<u>기초연금액을</u>
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	
<u>액을 말한다)을</u>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③
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과 해당 <u>기초연금액(제8조제1</u>	<u>기초연금액을</u>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	
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u>을</u>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	
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	
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	
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	
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	
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	
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